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17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김태욱, 문희성, 강혜순
이명녀, 정재환, 문기호
김도운, 홍영진, 안영호
박경흠

1. 제정이유

최근 소비 패턴과 유통 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 배송 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여 상인의 경영 효율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의 참여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매니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다. 공동배송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청년상인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
-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지방재정법」 제17조

5.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2025. 11. 18. ~ 11. 26.(8일간) / 의견없음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 및 공동배송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경영 효율성과 시장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디지털 전환”이란 전통시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상거래, 마케팅, 고객관리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공동배송”이란 전통시장 내 점포들이 물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배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외부 배송망과 연계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디지털 매니저”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디지털 전환 지원)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온라인 판매 활동 지원
2. 디지털 결제기기 설치 및 유지 관리 지원
3. 제품 사진,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지원
4.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및 컨설팅
5. 그 밖에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신청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디지털 매니저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매니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디지털 매니저는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콘텐츠 등록,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SNS 운영, 상인회 일반행정 및 회계 사무 등을 지원한다.

제5조(공동배송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상인조직이 공동배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현대화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동배송센터에 대하여 운영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또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청년상인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 기반과

공동배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상인의 창업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센터 등의 지원 과정에서 지역 청년, 노인, 경력보유여성 등 지역 인재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교부, 정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 및 공동배송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2. 11.>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6. 12. 2., 2017. 7. 26.>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 5.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 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7. 26., 2018. 12. 11., 2021. 4. 20.>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
- ④ 상인회에서 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은 반납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및 공동배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조례 등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 어려움

3. 작성자

소 속: 전통시장과

이 름: 윤승재

직 급: 행정7급

연 락 처: 052-290-3323